

2015년 법원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형법1책형】

2015년 3월 7일 법원9급 공채

형법 총평 및 해설

백광훈 교수 (법검단기 법원·검찰팀장, 형법 대표교수)

[총평] 이번 2015년 법원직 형법 시험은 전통적인 법원직 출제 경향 그대로 판례, 조문이 강세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① 기본이 충실한가를 평가하려고 한다는 점, ② 총론9문, 각론 16문으로, 총론보다 각론이 많이 출제되는 점, ③ 국가직(검찰직 등) 시험과는 달리 판례를 절대적 비중으로 출제한다는 점, ④ 판례문제의 경우 중요판례 위주로 출제하고 지엽적인 판례는 출제가 지양된다는 점 등이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형법과목의 평균점수는 예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이며(최소 1-2문항 이상), 따라서 형법에 있어서는 96점 이상이면 우수, 92점 이상이면 선방, 88점 이상이면 보통으로 볼 수 있겠다. 시험 보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맺음말에 갈음한다. 3월 8일, 백광훈 드림. * 면접반은 카페로 문의 바람.

문	난이도	영역	출제범위	구분
1	☆	총론	실행의 착수	조문, 판례
2	☆	총론	중지미수	판
3	☆☆	각론	신체적 법익	판
4	☆☆☆	총론	위법성조각사유	판
5	☆☆	각론	사기죄	판
6	☆☆	각론	공갈죄	판례
7	☆☆☆	총론	몰수, 추정	판례
8	☆	총론	상당인과관계	판례
9	☆☆☆	총론	죄형법정주의	판례
10	☆☆	각론	강제추행	판례
11	☆☆	총론	포괄일죄	판례
12	☆☆	총론	공범론	이론, 판례
13	☆☆☆	각론	장물죄	조문, 판례
14	☆	각론	횡령죄	판례
15	☆☆	각론	절도죄	판례
16	☆☆	각론	주거침입죄	판례
17	☆☆	각론	업무방해죄	판례
18	☆☆	각론	폭행죄 '위험한 물건 휴대'의 개념	판례
19	☆☆	각론	범죄단체조직죄, 방화죄	조문, 판례
20	☆☆	각론	뇌물죄	판례
21	☆☆	각론	공무방해죄	판례
22	☆☆	각론	공정증서원본 부실 기재죄 객체	판례
23	☆☆	각론	명예훼손죄	판례
24	☆☆	각론	무고죄	판례
25	☆☆☆	총론	보호관찰	조문, 판례, 이론

문 1.

【해설】 ③ (X) 보조금지원절차에 비추어 볼 때, 피해어민의 피해신고는 국가가 피해복구보조금의 지원 여부 및 정도를 결정을 함에 있어 그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일 뿐이고 그 지원 여부 등을 좌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인과 같이 실제로 태풍에 의한 피해발생이 없었으면서도 마치 피해가 있는 것처럼 관할 면장에게 피해신고를 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위 보조금 편취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大法院 1999.3.12, 98도3443). 같은 취지에서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수 있다.

정답 : ③

문 2.

【해설】 ② (X) 피고인이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의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끈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치솟는 불길에 놀라거나** 자신의 신체안전에 대한 위해 또는 범행 발각시의 처벌 등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는 볼 수 없다(大法院 1997.6.13, 97도957). 형법 제25조 (미수범)②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장애미수 : 임의적 감경)

정답 : ②

문 3.

【해설】 ④ (X)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 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大法院 2008.10.23, 08도6940).

정답 : ④

문 4.

【해설】 ④ (O) 4개 지문 모두 옳다.

㉠ (O) 스스로 야기한 강간범행의 와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깨물며 반항하자, 물린 손가락을 비틀며 잡아뽑다가 피해자에게 치아결손의 상해를 입힌 경우를 가리켜 법에 의하여 용인되는 피난행위라 할 수 없다(大法院 1995.1.12, 94도2781).

㉡ (O) 大法院 2007.12.28, 2007도5204

- ㉞ (0)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자가 야간에 군중들로부터 무차별 구타를 당하자 이를 방위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손톱깎기 칼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大法院 1970.09.17., 70도1473)
- ㉞ (0) 정당행위에 해당한다(大法院 2004.8.20, 2003도4732).

정답 : ㉞

문 5.

【해설】 ㉞ (X)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大法院 2004.3.12, 2003도333).

정답 : ㉞

문 6.

【해설】 ㉞ (X) 부동산에 대한 공갈죄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거나 또는 인도를 받은 때에 기수로 되는 것이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 받은 때에 기수로 되어 그 범행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大法院 1992.9.14, 92도1506).

정답 : ㉞

문 7.

【해설】 ㉞ (X)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 박탈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추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상당액을 의미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가액산정은 재판선고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大法院 2008.10.9, 2008도6944).

정답 : ㉞

문 8.

【해설】 ㉞ (X) 피고인이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것은 잘못이나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으로서 50여 미터 후방에서 따라오던 후행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피고인 운전차량의 좌측으로 돌진하는 등 극히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진행할 것까지를 예상하여 사고발생 방지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

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따라서 좌회전 금지구역에서 좌회전한 행위와 사고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大法院 1996.05.28, 95도1200)

정답 : ㉞

문 9.

【해설】 ㉞ (X)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법관이 합리적인 양형을 정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양형기준을 존중하여야 하나, 그렇다고 양형기준이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大法院 2009.12.10, 2009도11448)

정답 : ㉞

문 10.

- 【해설】 ㉞ (0) 4개 모두 옳다.
- ㉞ (0) 피해자의 성별·연령,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에 대하여 어떠한 신체 접촉도 없었던 점, 행위장소가 사람 및 차량의 왕래가 빈번한 도로로서 공중에게 공개된 곳인 점, 피고인이 한 욕설은 성적인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추행’과 관련이 없는 점, 피해자이 자신의 성적결정의 자유를 침해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단순히 피고인이 바지를 벗어 자신의 성기를 보여준 것만으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法院 2012.7.26, 2011도8805).
- ㉞ (0) 피고인은 나이 어린 甲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의도적으로 협소하고 폐쇄적인 엘리베이터 내 공간을 이용하여 甲이 도움을 청할 수 없고 즉시 도피할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범행을 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피고인이 甲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 아니하였고 엘리베이터가 멈춘 후 甲이 위 상황에서 바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甲의 성적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에 의하여 추행행위에 나아간 것으로서 위력에 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大法院 2013.1.16, 2011도7164, 2011전도124).
- ㉞ (0)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의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大法院 2000. 5. 26, 98도3257).

㉮ (0) 형법 제305조의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는 ‘13세 미만의 아동이 외부로부터의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물리력의 행사가 없는 상태에서 심리적 장애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권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는 고의만으로 충분하고, 그 외에 성욕을 자극·홍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까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大法院 2006.1.13, 2005도6791).

정답 : ④

문 11.

【해설】 ③ (X)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각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의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大法院 2008.12.11, 2008도6987).

정답 : ③

문 12.

【해설】 ④ (X) 방조행위의 시기는 정범의 실행행위시에 있을 것을 요하지 않으며, 정범의 실행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실행 착수 전에 장래의 실행행위를 예상하고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방조한 경우에도 정범이 실행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중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범종속성설에 따라 정범의 실행행위가 있을 것을 요한다. 따라서 방조를 시도하였으나 정범의 실행의 착수가 없는 경우(기도된 방조)는 기도된 교사와 달리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게 된다.

정답 : ④

문 13.

【해설】 ① (0) 장물취득죄에서 ‘취득’이라 함은 장물의 점유를 이전받음으로써 그 장물에 대하여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본범의 사기행위는 피고인이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본범에게 양도한 방조행위가 가공되어 본범에게 편취금이 귀속되는 과정 없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취득함으로써 종료되는 것이고,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위 돈을 인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예금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반환을 청구한 결과일 뿐 본범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점유를 이전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인출행위를 장물취득죄로 벌할 수는 없다(大法院 2010.12.9, 2010도6256).

② (X)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의뢰를 받은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 처분하였다 하

여도 장물보관죄가 성립되는 때에는 이미 그 소유자의 소유물 추구권을 침해하였으므로 그 후의 횡령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다(大法院 1976.11.23, 76도3067).

③ (X) 피고인은 강도예비와 아울러 장물운반의 고의를 가지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大法院 1999.3.26., 98도3030). 따라서 장물운반죄가 성립한다.

④ (X) 장물범과 피해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면 장물범의 형이 면제된다(인적 처벌조각사유). 직계혈족의 경우라면 동거 여부는 묻지 않는다. 제365조 제1항.

정답 : ①

문 14.

【해설】 ② (0) 익명조합원이 영업을 위하여 출자한 금전을 상대방인 영업자가 개인 용도에 소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法院 1971.12.28, 71도2032).

① (X)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大法院 2000.4.11, 2000도565).

③ (X) 동업자 사이에 손익분배 정산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동업자 한 사람이 임의로 동업자들의 합유에 속하는 동업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것이므로, 동업자 한 사람이 동업재산을 보관 중 임의로 횡령하였다면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횡령한 금액 전부에 대하여 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한다(大法院 2011.6.10, 2010도17684).

④ (X) 이른바 계약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우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취득을 위한 계약의 당사자도 아닌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의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大法院 2012.11.29, 2011도7361).

정답 : ②

문 15.

【해설】 ② (X)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

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法院 2008.6.12, 2008도2440).

정답 : ②

문 16.

【해설】 ② (0)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에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계단과 복도는, 주거로 사용하는 각 가구 또는 세대의 전용 부분에 필수적으로 부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거주자들에 의하여 일상생활에서 감시·관리가 예정되어 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大法院 2009.8.20, 2009도3452).

① (X)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야간에 타인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들이미는 행위를 하였다면 피고인이 신체의 일부가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으면 주거침입죄의 범의가 인정되고, 비록 신체의 일부만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기수이다(大法院 1995.9.15., 94도2561).

③ (X)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가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거주자나 관리자와의 관계 등으로 평소 그 건조물에 출입이 허용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거주자나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불구하고 감행된 것이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며, 출입문을 통한 정상적인 출입이 아닌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침입 방법 자체에 의하여 위와 같은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法院 1995.9.15, 94도3336).

④ (X)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주거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행위, 즉 구성요건의 일부를 실현하는 행위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범죄구성요건의 실현에 이르는 현실적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개시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출입문이 열려 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 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바로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객관적인 위험성을 포함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그것으로 주거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大法院 2006.9.14, 2006도2824).

정답 : ②

문 17.

【해설】 ② (X) 신규직원 채용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공사 사

장이 시험업무 담당자들에게 지시하여 상호 공모 내지 양해하에 시험성적조작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법인인 공사에게 신규직원 채용업무와 관련하여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한 것이 아니므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大法院 2007.12.27, 2005도6404).

정답 : ②

문 18.

【해설】 ④ (X) 폭처법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형법 제320조 소정의 특수주거침입죄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주거나 건조물 등에 침입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수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기로 공모한 후 그 중 일부는 밖에서 망을 보고 나머지 일부만이 건조물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있어서 특수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직접 건조물에 들어간 범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 범인이 흉기를 휴대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피고인 등 범인들을 기준으로 할 경우 그들이 위 건조물에 들어갈 때 30 내지 50여 m 떨어진 거리에 세워진 차 안에 있던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大法院 1994.10.11, 94도1991).

정답 : ④

문 19.

【해설】 ① (X)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인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 ①

문 20.

【해설】 ③ (X)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공무 수행의 공정과 그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은 여전히 보호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大法院 2014.3.27, 2013도11357).

정답 : ③

문 21.

【해설】 ④ (X)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는 별도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大法院 2008.11.27, 2008도7311).

정답 : ④

문 22.

【해설】 ① ㉠ (O) 1개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객체에 해당한다.

㉡ (X) 大法院 1988.5.24, 87도2696

㉢ (O)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大法院 2006.10.26, 2006도5147).

㉣ (X)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大法院 2004.1.27, 2001도5414).

㉤ (X) 사업자등록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28조 제1항에 정한 ‘등록증’에 해당하지 않는다(大法院 2005.7.15, 2003도6934).

정답 : ①

문 23.

【해설】 ② (X) 통상 기자가 아닌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할 경우에는 그 자체로서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되는 것이므로 그 때부터 곧 전파가능성을 따져 공연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와는 달리 기사를 통해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어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大法院 2000.5.16, 99도5622).

정답 : ②

문 24.

【해설】 ① (X) 피고인이 사립대학교 교수인 피해자들로 하여금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범정부 국민포털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해자들은 사립학교 교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다(大法院 2014.07.24., 2014도6377)

정답 : ①

문 25.

【해설】 ③ ㉡ (X), ㉢ (O), ㉣ (O), ㉤ (O) 3개가 옳다.

㉠ (X) 보호관찰 또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大法院 1998.4.24, 98도98)

㉡ (O) 형법에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집행유예하는 경우에 명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후에 집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죄형법정주의 법률주의 원칙 상 지문은 옳다.

형법 제62조의2(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 (O)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大法院 1999.3.10, 99도33).

㉣ (O)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형법에는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선고유예의 조건으로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을 부과할 수 없다.

형법 제59조의2(보호관찰) ①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경우에 재범방지를 위하여 지도 및 원호가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정답 : ③

-끝-